#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43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김예지·김선교·박덕흠

강민국 • 서천호 • 정성국

김소희 · 최수진 · 고동진

강대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산불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조한 시기의 산불은 그 규모가 대형화되어 사망자와 부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주택, 농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광범위하게 파괴하므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산불발생우려지역"이란 산불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7조의2(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있다.
  -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 1. 지정사유
  -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 등으로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 ⑦ 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다.

-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된 산불발생우려지역이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항·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① 그 밖에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고시·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76조제4항 중 "3년"을 "5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산불발생우려지역"이란 산불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 17조의2에 따라 지정 또는 변 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 다. 10. ~ 14. (생 략) 10.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산불로부터 국 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7 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를 토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불 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불발생우려지

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로 정하는 사항

-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
-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발생우려 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 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

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관리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기관의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 등으로 산불발생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에 따른다.
- ⑦ 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 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 이 발생한다.
-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6항에 따라 지정·변

   경된
   산불발생우려지역이 그

제76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u>3년</u>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략)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항·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그 밖에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불발생우려 지역의 지정·고시·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5</u>	<u>년</u>
	 - <u>5천만원</u> -	

⑤ (현행과 같음)